■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9] <신설 2011.2.10>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63조의2제2항 관련)

1.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가. 인증마크의 도안

나. 도안 요령

1) 표시는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인증마크는 원칙적으로 매뉴얼에 따른 사진제판 방식 또는 슬라이드필름에 의한 투사방식으로 복제되어야 하며, 특별히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그리드 스케일의 비례규정에 맞게 재생되어야 한다.

3) 인증마크는 황금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고 무광 금박으로 처리하며, 신문·잡지 등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사용방법

가. 인증마크의 사용방법

1) 인증마크는 사용될 곳의 특성에 따라 기본형 및 단색도 적용형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마크 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2) 인증마크는 Vector Type(*.ai)의 컴퓨터 그래픽파일을 사용하여 재생하도록 한다.

나. 인증마크의 표시 예

의료기관 인증표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표시 예에 따라 사용한다.

<표시 예 1> <표시 예 2> <표시 예 3>